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5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7. 5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른 조례 정비(안 제39조)

-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년도 개정 : 2003년 ⇒ 2012년

나.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(안 제29조, 제66조)

- 감정평가기관, 감정평가법인 ⇒ 감정평가업자

다. 기타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(안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27조)

3. 근거법규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, 제27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5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2016. 5. 16. ~ 2016. 6. 7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법령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법령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동”을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영 제17조”를 “법 제21조”로 한다.

제21조제4항 중 “법 제27조제4항”을 “법 제27조제6항”으로 하고, 제5항 중 “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”를 “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서 입찰조건에 정한대로”로 한다.

제27조제4항제3호 중 “설치자가”를 “설치자에게”로 한다.

제29조제4항 중 “감정평가기관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4호 중 “2003년 12월 31일(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, 법률 제7698호, 2005. 11. 8.)”을 “2012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2003년 12월 31일”을 “201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6조 중 “부동산가격공시”를 “부동산 가격공시”로 하고, “감정평가법인에”를 “감정평가업자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 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.</p> <p>제16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,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든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 ① ----- -----<u>법령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16조(무상사용 기간) ----- -----<u>법 제21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법 제27조제6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----- -----<u>법 제27조제6항 및</u> <u>영 제21조에 따라서 입찰조건에 정한대로</u> ----- ----- -----</p>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(의안번호 1252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6. 7. 5.(화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7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7. 13.(수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성규 행정지원국장)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처의 규제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른 조례 정비(안 제39조)
 -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기준년도 개정 : 2003년 ⇒ 2012년
-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(안 제29조, 제66조)
 - 감정평가기관, 감정평가법인 ⇒ 감정평가업자
- 기타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(안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27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강기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